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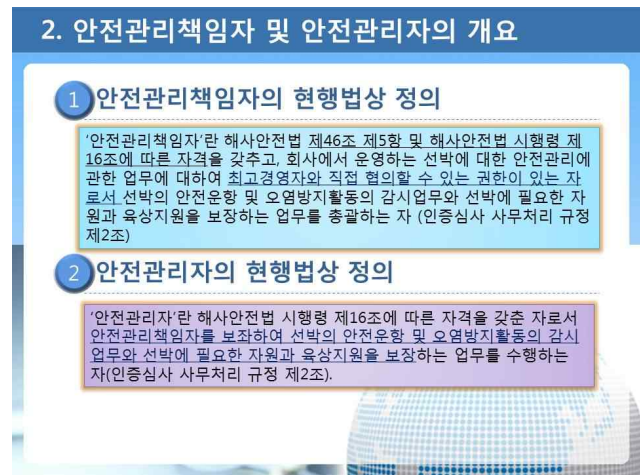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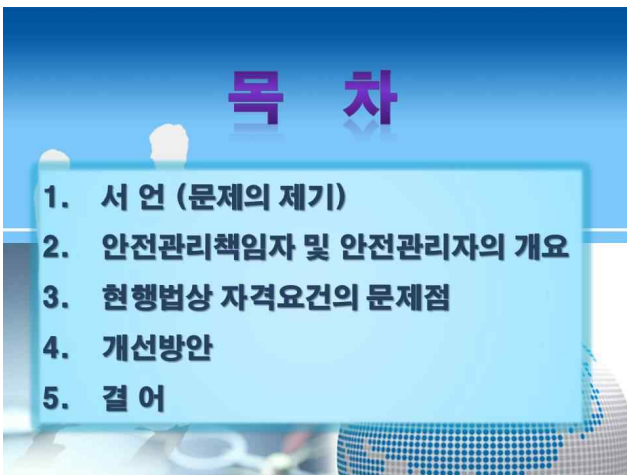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

진호현* · † 김진권

* 케이오엘 주식회사 팀장(법학박사), † 한국해양대학교 해상수송과학부 부교수

요 약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이라고 하는 이른바 'ISM Code'를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이행당사자인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해사안전법,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국제해사기구, 국제안전관리규약, 인적과실, 행정행위의 하자



* 주저자 : jinhohyun@hanmail.net, 051)413-8121
 † 교신저자 : jinkwon@kmou.ac.kr, 051)410-4234

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개요

3 ISM Code상 안전관리책임자(Designated Person(s))

"각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고 회사와 선박직원 간의 연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자"

MSC-MEPC.7/Circ.6 Guidance on The Qualifications, Training and Experience necessary for undertaking The role of The Designated Person under The provisions of ISM Code

•교육수준 및 경력

"주관청 또는 위임기관에 의해서 인정된 제3차 교육기관으로부터 관련 분야의 경영, 공학 및 물리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1978년 STCW 협약에 따라서 선박의 사관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항행선에 승선한 경험(Seagoing Experience)이 있는 자 또는, 적어도 3년 이상의 선박관리 상급 실무 책임자로서의 경력과 함께 다른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자"

•경력 및 능력수준

"ISM Code에 대한 지식 및 이해, 강제법규 및 규칙, 적용 가능한 Code지침 및 기준, 조사-질문-평가 및 보고의 심사기법, 기술적-운항적 측면에서의 안전관리, 해운 및 선박운항에 대한 기본지식, 1회 이상 안전경영시스템 심사참관, 승선선원과 상위관리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개요

6 현행법상 자격기준(단서조항)

1.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은 위 표에 따른 경력 기준 및 교육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위 표의 근무경력에는 1년 이상의 승선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위 표의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은 정부대행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4.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5. 사업장 소속 선박이 1척(내항선은 2척 이하)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개요

4 현행법상 자격기준(경력기준)

구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이하 "외항선"이라 한다)의 사업장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이하 "내항선"이라 한다)의 사업장
경력 기준	안전관리책임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1. 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외항선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 2. 외항선 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5급 항해사, 5급 기관사 또는 5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선박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안전관리자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외항선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3. 현행법상 자격요건의 문제점

1 경력기준의 기산점이 불명확

법률개정시점 이후의 경력만을 인정 또는 법률에서 언급하는 모든 경력의 인정

대한민국 성문법 국가 → **법률구속의 원칙**

2 해기사 면허의 유효성

현행법 문리해석

예) 외항선 안전관리책임자 - 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외항선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해기사 면허가 유효하여야 함

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개요

5 현행법상 자격기준(교육기준)

구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
교육 기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16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 1. 안전관리체제 수립·운영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령 2. 조사, 질문, 평가 등 심사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술 3.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내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 4. 해운·선박운항의 지식 및 육해상 직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14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 1. 안전관리체제 수립·운영 관련 국내법령 2. 조사, 질문, 평가 등 심사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술 3.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내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 4. 해운·선박운항의 지식 및 육해상 직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14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 1. 안전관리체제 수립·운영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령 2. 조사, 질문, 평가 등 심사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술 3.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내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 1. 안전관리체제 수립·운영 관련 국내법령 2. 조사, 질문, 평가 등 심사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술 3.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내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

3. 현행법상 자격요건의 문제점

3 교육요건의 실효성

선박소유자가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

공법적 요소에 위배

2 안전관리책임자의 등록여부

안전관리책임자와 같은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관청에 신고 및 등록하여 해당 관청에서 그 자격 유효를 판단하고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개선방안

1 자격기준(경력기준)

현행규정 (안전관리책임자)	개정내용 (안전관리책임자)	개정이유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1. 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외항선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외항선 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1. (좌동)-- 단, 근무경력에 대한 기산점은 제한없음. 2. (좌동)-- 단, 안전관리자의 근무경력에 대한 기산점은 2009년 11월 26일 부터로 한다.	2009년 11월 26일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 시행령에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었음. 따라서 2009년 11월 26일 부터를 그 기산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개선방안

3 안전관리책임자의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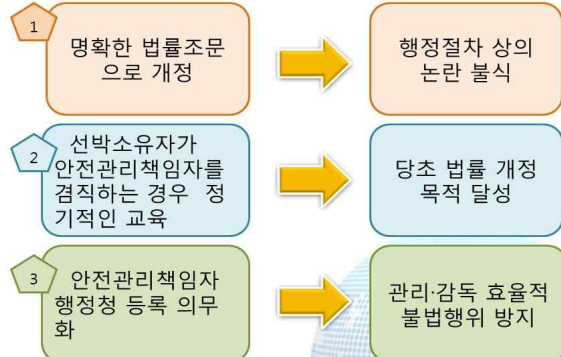
현행규정	입법내용	제안이유
관련 조문 없음.	해사안전법 46조의2(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등록) ① 법 제46조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자는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관할 지방해양안전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 관할 지방해양안전청은 해당 사업장에게 안전관리책임자 증서 및 안전관리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당 관청에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등록하게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사전방지 등의 효과와 적법한 법률 이행에 대한 동기부여가 됨.

4. 개선방안

2 자격기준(교육기준)

현행규정	개정내용	개정이유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비교 1.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은 위 표에 따른 경력기준 및 교육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비교 1. 안전관리책임자 -- (좌동)-- 갖추어야 한다. 단, 2011년 12월 16일 이후 실시된 교육에 대해서 인정한다.	2011년 12월 16일 해사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조문 중 교육내용이 신설 되었음. 따라서 2011년 12월 16일 이후 실시되는 교육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결 어



4. 개선방안

3 교육요건의 실효성 확보

현행규정	개정내용	개정이유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비교 5. 사업장 소속 선박이 1척(내항선은 2척 이하)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비교 5. (좌동)-- 단,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국제협약 및 국내법률에서 일정 이상의 경력과 지식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소유자의 경우 협약이나 법률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기적 교육이수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